

환경부  
www.me.go.kr

한국환경자원공사  
www.envico.or.kr

■ 본사

주 소	전 화 번 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www.epr.or.kr)	032-560-1588

■ 지사

지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지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4층	(02)3153-0531~8, 3153-0551~4(배기물부담금)
경기지사	경기도 안성시 서문면 신능리 220번지	(031)678-6441~9, 678-6481~4(배기물부담금)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2-3	(033)240-9532~5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743번지(KT6층)	(043)219-6441~5
대전·충남지사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77 월산지방산업단지	(041)866-0541~3
전북지사	전북 정읍시 하북동 848 번지 정읍제 2산업단지 16블럭	(063)532-6004~8
광주·전남지사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1198-1	(061)370-3502, 370-3521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900-1	(053)580-7531~7
부산·경남지사	부산 사상구 괘법동 560-19 신한은행 3층	(051)320-5350~5360
제주출장소	제주시 일도2동 357-15 대동빌딩 2층	(064)722-6542

■ 공장

공 장	주 소	전 화 번 호
사회폐비닐처리공장	경기 시흥시 정왕동 사회국가공업단지 1마 506호	(031)433-2235
청주폐비닐처리공장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현암리 62	(043)213-9321
안동폐비닐처리공장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28	(054)823-0083
담양폐비닐처리공장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388-1	(061)381-1688
사회폐비닐처리공장	경기 시흥시 정왕동 사회국가공업단지 1마 506호	(031)433-2235



##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생산자가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므로  
자원이 절약되고 환경보전에 기여

대상  
품목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타이어, 윤활유, 전지, 형광등,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2006년 부터 시행)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 2003년 1월부터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물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여 우리사회를 「자원순환형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 01\_ 제도의 개요 및 도입배경
- 02\_ 기존 폐기물예치금제도와와의 차이점
- 03\_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의 각 주체별 역할
- 04\_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흐름도
- 05\_ 제도의 주요내용
- 06\_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 07\_ 품목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
- 08\_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 09\_ 재활용의무 미이행시의 벌칙
- 10\_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 11\_ 분리배출표시제도
- 12\_ 빈용기보증금제도
- 13\_ 제도시행의 기대효과
- 14\_ 외국의 EPR제도

## 01 제도의 개요 및 도입배경

### ■ 개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매년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고, 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을 조직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 재활용의무량 미 이행시에는 폐기물의 실 회수 · 재활용비용의 최고 1.3배에 달하는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의무이행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 ■ 도입배경

- 이전에는 소비자 및 지자체가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선별 등 재활용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생산자는 예치금납부 등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는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 생산자가 재활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소비자 · 지자체 ·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일본, 호주 등 여러 환경선진국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 02 기존 「폐기물예치금제도」와의 차이점



폐기물예치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출고량 100%에 대해 예치금을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여건을 고려 출고량의 일정부분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적 재활용의무(소극적 비용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 포장재의 제조업자가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재활용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재활용의무(적극적 생산자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 포장재의 제조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부담으로 재활용률 제고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고량에 전체에 대한 예치금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많음</li> <li>- 예치금 요율이 낮아 재활용 유인효과 미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부담으로 재활용률 제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성가능한 재활용의무량 부과로 생산자의 부담 경감 및 재활용률 제고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산업 육성효과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환 예치금의 국고환수(약55%)로 재활용산업에 지원효과 미약</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산업 육성효과 극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가 재활용업체에 직접지원 함으로써 재활용산업 육성효과 극대</li> </ul> </li> </ul>

### 0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의 각 주체별 역할

소비자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li> <li>-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쓰레기와 별도로 분리배출</li> </ul>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의무 이행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납부)</li> <li>●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신제품 구매자의 폐전자제품 무상회수</li> <li>●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부착</li> </ul>
자치단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배출된 제품·포장재의 분리수거</li> <li>● 분리배출에 관한 지역주민 홍보</li> <li>● 분리수거함 설치 등 분리수거 기반 구축</li> </ul>
한국환경자원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의 출고량,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접수·승인,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li> <li>● 재활용의무 이행실태 점검</li> </ul>
정부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령 제·개정</li> <li>●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를 산정·고시</li> <li>●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li> </ul>

### 0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흐름도



## 05 제도의 주요내용

### ■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 제출시기
  -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년도 3월말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결산보고서 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의 경우에는 수입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기초자료
  - ※ 개별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기한내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재활용의무율 고시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전년도말까지 재활용의무율을 고시
- 재활용의무율 산출식  
 $(\text{전년도 재활용의무율} \times \text{가중치1}) + (\text{전전년도 재활용율} \times \text{가중치2}) + (\text{전전전년도 재활용율} \times \text{가중치3}) + \text{조정계수}$ 
  - ※ 가중치1: 2차연도 1, 3차연도 0.6, 4차연도 이후 0.5
  - 가중치2: 2차연도 0, 3차연도 0.4, 4차연도 이후 0.3
  - 가중치3: 2차·3차연도 0, 4차연도 이후 0.2

### ■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

- 당해년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 재활용의무율

###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승인

- 제출시기
  -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당해 연도 1월말 제출(당해연도에 최초로 출고·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재활용시설 보유현황(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 보유현황)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 적법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 직접재활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위탁계약 체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 및 분담금 납부

###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년도 3월말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의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

-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에 대하여 부과
  - 재활용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과 차이가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양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전량
  -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 06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수량

- 부과금 산정 · 부과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포장재의 재활용비용의 115%에서 130%까지를 부과
  - 체납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 ■ 재활용의무 대상사업자

- 전자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 등 제품  
: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 · 수 · 축산물 판매업자 및 수입업자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포장재 제조업자



### ■ 재활용의무 면제자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및 농 · 수 · 축산물 판매업자, 포장재 제조업자  
: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포장재 및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업자 : 전년도 연간 총 수입액이 3억원 미만
- ※연간 총매출액과 수입액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전체 매출액, 수입액을 말함

대상품목	세부품목	비 고
I. 제 품  - 전자제품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4.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5.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6. 오디오	
	7.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8. 프린터	- 2006년 1월 시행
	9. 복사기	- 2006년 1월 시행
	10. 팩시밀리	- 2006년 1월 시행
- 전지류	11. 수은전지	
	12. 산화은전지	
	13. 니켈 · 카드뮴전지	
	14.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함)	
- 타이어	15. 타이어	
- 윤활유	16. 윤활유	
- 형광등	17. 형광등	
II. 포장재  -음식료품 · 농수축산물 · 세제류 · 화장품류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부탄가스 · 살충살균제를 담거나 포장 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재	18. 종이팩	
	19. 유리병	
	20. 금속캔(철캔, 알미늄캔)	
	21.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7 품목별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대상품목	방법 및 기준
전자제품	<p>가.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하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해당 중량기준으로 텔레비전(PDP 및 LCD TV 제외)·개인용 컴퓨터는 2005년 말까지는 55퍼센트 이상, 그 이후에는 65퍼센트 이상, 냉장고·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말까지는 60퍼센트 이상, 그 이후에는 70퍼센트 이상, 세탁기·에어컨디셔너는 2005년 말까지 70퍼센트 이상, 그 이후에는 80퍼센트 이상 일것.</p> <p>단, 냉장고는 염화불소탄소 등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을 안전하게 따로 회수하고, 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는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기금속을 회수하는 등 안전하게 재활용하여야 하며, 이동전화단말기 등의 전지는 전지류의 기준에 의한다.</p> <p>나. 재사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p>
타이어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바목으로 재활용하는 비율이 2005년 말까지는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70퍼센트 이하일것.</p> <p>가.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p> <p>나.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제조</p> <p>다.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제연료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제조</p> <p>라.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p> <p>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p>

대상품목	방법 및 기준
	<p>바.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의 처리</p> <p>사. 폐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로 이용</p> <p>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p>
윤활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제연료유기준에 적합한 유류의 제조
전지류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처리 (1차 리튬전지의 경우에는 회수하여 안전하게 처리)
형광등	유리는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수은은 금속수은 또는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
종이팩	<p>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p> <p>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p> <p>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p>
유리병	<p>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p> <p>나. 폐유리병을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p> <p>다. 폐유리병을 사용한 재생원료(유리분말) 제조</p> <p>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p>
금속캔	<p>가. 폐금속캔을 압축 또는 파쇄하여 금속원료를 제조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p> <p>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p> <p>다. 폐금속캔을 세척하여 재사용</p>

대상품목	방법 및 기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p>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수출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20퍼센트 이하 일것.</p> <p>가.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단,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품에 한한다)</p> <p>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성형제품의 제조</p> <p>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p> <p>라.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세척하여 재사용</p>
발포폴리스틸렌 (EPS)	<p>가. 폐발포폴리스틸렌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p> <p>나. 폐발포폴리스틸렌을 사용한 성형제품의 제조</p> <p>다. 폐발포폴리스틸렌을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코팅제품의 제조</p> <p>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p> <p>마. 폐발포폴리스틸렌을 세척하여 재사용</p>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라목 및 마목으로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가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 일것.</p> <p>가. 페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단,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품에 한한다)</p> <p>나. 페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p> <p>다. 유류 제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6호 규정에 의한 정제 연료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p> <p>라. 페플라스틱을 사용한 고휘연료제품 제조(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에 한한다)</p> <p>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p> <p>바. 재활용을 목적으로한 수출</p> <p>사. 페플라스틱을 세척하여 재사용</p>

## 08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 생산자가 스스로 재활용
-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
-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

## 09 재활용의무 미이행시의 벌칙

-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재활용비용의 115%에서 130%에 해당하는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
- 징수한 재활용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재활용 산업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10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 ■ 무상회수대상 전자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는 2006년 1월부터 시행
- ※ 판매업자의 무상회수의무는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한하며, 같은 종류의 제품이면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한 것이라도 회수하여 함.
- ※ 전자제품 무상회수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11 분리배출표시제도

## ■ 개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일반국민들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쉽게 확인하고 이를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

## ■ 표시도안



〈 도안내부 사용문자 〉

재질 구분	도안내부 사용문자
플라스틱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금속	철, 알루미늄
종이	종이, 종이팩
유리	유리

※상기 '표시도안' 의 내부문자 'PET' 는 예시임

## ■ 표시방법

- 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 표시크기 : 가로, 세로 최소 8mm이상

- 표시색채 : 포장재 색채와 대비되는 색채
- 표시위치 : 제품·포장재의 정면 또는 측면, 불가피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 가능
  -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sup>2</sup>(필름 포장재는 100cm<sup>2</sup>)미만인 포장재와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용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
  -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12 빈용기보증금제도

## ■ 빈용기보증금대상

-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 주세법 제4조 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소주, 맥주 등)
  - 청량음료류(콜라, 사이다 등)
  - ※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
- 소매업자는 판매처와 무관하게 취급하고 있는 동종의 제품을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 ※빈용기보증금 미 반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14 외국의 EPR제도

〈 비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

품 목	규 격	비용기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소매업자에게 50%이상 지급)
주류 / 청량음료	190ml 미만	20원 / 개	5원 / 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 / 개	13원 / 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 / 개	16원 / 개
	1000ml 이상	100원~300원 / 개	20원 / 개

## 13 제도시행의 기대효과

- 정부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재활용 목표량을 설정함으로써 생산자가 목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
- 친환경적인 소재선택, 재활용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임
- EPR대상품목의 재활용율을 10% 높일경우, 폐기물발생량 감소로 매립비용절감, 원자재수입대체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90년부터 독일, 프랑스, 체코, 헝가리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

### ■ 일본

- '포장용기리사이클법' 제정에 따라 '97년부터 정부가 매년 사업자에게 용기포장의 재활용의무량을 결정·부과하며
- 지자체가 포장용기의 분리수거, 선별, 압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생산자는 지자체가 수집·보관한 용기포장을 인수하여 재활용
- <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가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

### ■ 독일

- '91년제정된 '포장폐기물법'에 의거 생산자에게 소비후 제품에 대한 수집·선별·재활용의무를 부여
- 유리, 철, 알루미늄, 종이·판지, 플라스틱, 복합재질에 재활용목표율을 부과하고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 생산자 공동으로 수집·선별·재활용 책임을 대행할 생산자기구(DSD)를 구성하여 활동

### ■ 프랑스

- '포장법'에 따라 '93년부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가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포장용기의 회수를 위해 <Eco-Emballages>라는 생산자기구를 설립하여 운영